

##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998. 7.22  
교육사회위원회

###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1998년 7월 14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8년 7월 14일
- 다. 상정일자 : 1998년 7월 22일  
(제150회임사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심사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 가. 제안이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 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교육법 제158조”를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으로 함 (안 제1조)
- 특별장학생에 대한 공납금의 면제범위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로 함 (안 제5조)
- 특별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중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 함 (안 제7조제1항제2호)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특별장학생에 대한 공납금 면제범위의 일부 조정과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중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상위법개정(98.2)후 조례개정(98.7)의 지연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임

4. 질의및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첨부서류

가.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